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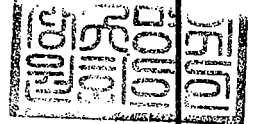
성 명	한 글	최 상 돈	일본명	
	한 자	崔 相 敦	이 명	
출 생 연월일	1869년 5월 8일		사 망 연월일	1916년 12월 3일
본 적	漢城府 南署 會賢坊 銅峴契 小廣橋洞 38統 11戶(1906년 주소)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984.7.10	員外郎 參上 (대한제국관원이력서, 847쪽)		
	1895.2.23	일본국 관비 유학생 (같은 자료)		
	1897.8.2	일본 체신성 견습 (같은 자료)		
	1898.1.15	일본 철도사무 견습 (같은 자료)		
	1898.12.20	일본에서 귀국 (같은 자료)		
	1900.4.29~1902.8.23	철도원 기사(주임관6등) (같은 자료, 338쪽)		
	1904년 ~ 1945년			
	1904.4.7~1904.9.30	임시 군용철도 종사원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8쪽)		
	1904.7.23	철도원 기사(주임6등) (같은 자료, 847쪽)		
	1904.10.1	경의간 임시군용철도 검찰원 (같은 자료, 671쪽)		
	1905.3.7	농상공부 기사 (같은 자료, 338쪽)		
	1905.12.26	농상공부 철도국장 (같은 자료)		
	1906.6.8	일본정부로부터 훈5등 서보장을 받음 (敍勳 卷2, 외국인[1906])		



1906.8.2	겸임 농상공부 광무국장 (관보, 1906년 8월 7일)
1907.2.22	官人俱樂部 총무원 (각부통첩, 1907년 2월 22일)
1908.1.1	농상공부 산림국장 (관보, 1908년 1월 10일; 1908년 1월 14일)
1909.11.2	'伊藤博文追悼會' 鋪陳擔任 위원 (황성신문, 1909년 11월 6일 3면)
1910.10.1~1916.12.3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1916년 12월 7일)
1912.8.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5월 31일)
1916.12.3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 중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2월 7일)

조 서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재직

▶ 「從5位李始榮外三十三名朝鮮總督府中樞院副贊議被仰ノ件」, 『任免』 卷26, 외국인, 1910;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3면, 「잡보」.

1910년 10월 1일 최상돈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함.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러일전쟁에 협력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훈4등 서보장을 받음

▶ 「韓國陸軍騎兵參領勳五等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敍勳』 卷4, 외국인 2, 1908.

통감부 초대통감 이토[伊藤博文]의 上奏文에 의하면, “1904·5년 전쟁[러일전쟁 - 작성자]에 관하여 한국인 騎兵參領 朴榮喆 이하 28명은 別冊 勳績明細書와 같이 공적이 현저한 자이므로 別紙 勳績명부와 같이 서훈을 수여해 주십시오. (중략) 한국농상공부 철도국장 겸 광무국장 최상돈(주임2등) 서보장 4등 (후략)”.

2)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5월 31일.

1912년 8월 1일 <明治45년 칙령 제56호>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참고사항①】 일본정부로부터 훈5등 서보장을 받음

- 출전: 「韓國禮式官金祚鉉外十六名敍勳ノ件」, 『敍勳』 卷2, 외국인, 1906.

“통감이 상주한 한국 禮式官 金祚鉉 이하 17명 서훈의 건을 조사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작년 11월 특파대사 이토[伊藤博文]가 신협약체결[제2차 한일협약 - 작성자]을 위해 한국에 부임했을 때 그 접반의 임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한국 황제폐하는 그 때 同 대사[伊藤博文- 작성자]의 수행원에게 훈장을 증여하여 優遇를 표시하였으므로, 우리도 상호적 우대의 취지에 기반하여 위 접반관을 서훈한다면 양국의 交誼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이다. (중략) 철도국 기사 최상돈(주임4등)에게 5등 서보장을 수여함 (후략)”

【참고사항②】 이등박문추도회 실행위원을 역임

- 출전: 『황성신문』, 1909년 11월 6일 3면, 「追悼會設行委員」.

“鋪陳擔任 崔相敦”

【참고사항③】 일본 일왕비의 사망을 애도함

- 출전: 「通牒」 『국립중앙도서관 金敎聲關係書類』, 1914년 4월 11일.

1914년 4월 11일 고문 朴齊純, 찬의 남작 閔商鎬, 부찬의 崔相敦이 중추원을 대표하여 일본 일왕비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출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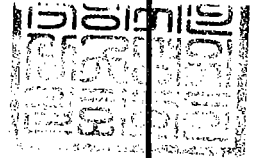
▣ 기타사항: 한말 단체활동

- 출전: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1908년 8월 25일.

1908년 8월 기호흥학회 찬무원.

- 출전: 『대한흥학보』 제6호, 1909년 7월 31일.

1909년 7월 서북회관 내 강연회 기부금(20전).



판 단

최상돈은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귀국전까지 주로 체신·철도 관련 사무를 익히면서 3년 넘게 일본에 체류한 인물이다. 1898년 귀국 후, 철도원 기사로 재직하면서 러일전쟁 때 일본 군용철도 종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의 대가로 1908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훈4등 서보장(瑞寶章)을 받았다. 또 이토[伊藤博文]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그 수행에 종사하여 훈5등 서보장을 받기도 했으며, 이토가 사망한 후 이른바 ‘이등박문(伊藤博文)추도회’가 열렸을 때 행사의 실무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대한제국 시기에 일찍부터 일본과 교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에는 농상공부 산림국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 최상돈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어, 1916년 12월 3일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여 동안 부찬의로 활동하였다. 이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최상돈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 군용철도 건설에 조력한 점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았고, 한일합병 이후인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상돈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 및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